

‘학생인권법’,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응답이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 발의 환영 및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주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광주교육시민연대,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자치조례가 있는 7개 지역의 관련 공동대응단위 및 시민단체)

1. 2024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제 특별법의 형태로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도 발의된 것입니다.
2.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역시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학교에서는 학칙과 관행 등의 이름으로 학생의 인권이 경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0년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역 자치법규의 한계상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의 보편적 기준 및 구제절차 등을 마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인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3. 학생인권조례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에 학생인권을 법률로 보장할 필요성은 한층 더 대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인권 보장에 반대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일부 세력은 끊임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고, 새로 제정되는 것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에 호응하여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후퇴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교사 사망 사건을 명분 삼아, 해당 사건은 학생인권조례와 직접적 관련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쏟아냈습니다. 소

지품 압수 등을 허용하는 '생활지도 고시'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강행하였고,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대체 조례 예시안을 제시하는 등 인권에 반대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과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고, 충남에서는 실제로 폐지안이 통과되고 재의에 부쳐져 부결되었다가, 또다시 폐지안이 통과되는 등 인권에 대한 공격이 지치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4. 이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강민정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인권을 법률로 보장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조례의 한계와 위기에 놓인 학생인권 현실에 대한 우려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또는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인천)가 시행 중인 7개 지역 공대위 및 학생인권운동을 함께 했던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5. 22대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의 뜻이 분명히 표출되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소수자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드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을 공약한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럿 있었던 만큼, 국회가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연혜원(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강민정(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 조영선(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사)
 - 박은경(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이제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
 - 윤명화(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 송성영(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학생인권법’,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응답이다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의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가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외면하는 존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어린이·청소년, 특히 초·중·고 학생도 그중 하나다.

한국이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게 1991년, 두발자유 요구 등 청소년인권운동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대두한 게 1990년대 후반부터다.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학교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그 이전 1980년대부터 있어왔다. 수십 년 동안의 이런 요청에 대해 교육부로 대표되는 한국 정부의 응답은 무엇이었던가. ‘학생의 본분’, ‘학교의 질서’를 말하며 목소리 내는 학생들을 탄압했다. 수차례나 학생인권 문제는 학교의 자율에 맡겨진 사안이라고, 인권 침해도 정당한 교육·지도일 수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선택했다.

정부의 의무 방기와 무책임에 맞선 방안이 법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결과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몇몇 지역에서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들의 인권 현실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 그러나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 현재도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광역지자체가 10여 곳에 달하며, 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두발·복장규제, 체벌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았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는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어 서울·충남 등 지역에선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은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얼마 전에도 전교생의 두발을 획일적으로 단속한 대전 지역 학교의 사례, 학생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한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 말, 강민정 의원이 국회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간 대표적인 학생인권의 내용들을 법률로 확인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정책 수립, 침해 구제 등을 해야 함을 명시했다. 학생의 인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헌법」 제10조의 이행이자, 학생도 인간이라고 외쳐 온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인권법은 2006년과 2008년, 민주노동당 최순영·권영길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형태로 냈던 적이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최초 발의로부터는 18년, 현 국회에서 발의된 지는 2년

이 넘도록 학생인권법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강민정 의원안은 특별법의 형태로 제안된 최초의 법안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를 확실히 달성하려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따라와야 한다는 점 등 고려해야 할 과제도 있겠으나, 특별법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의 우선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의의도 크다. 특별 법안의 발의가 학생인권에 대해 무관심으로 침묵하던 국회를 흔들어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자유와 평등, 인권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이 이 법안에도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이 담고 있는 학생의 인권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등이 명시한 권리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인간이자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내용들이다. 이런 권리들을 지키기 위하여 학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에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지우며, 교육청에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한 법안의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한다. 학생들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에,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는 교육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은 학생인권법에도 찬성할 것이라 믿는다.

현재 원내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은 총선 당시 청소년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을 발표했던 바 있다. 시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에 다수 의석을 준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며 개혁을 추진하라는 기대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머뭇거리지 말고 공약 이행에 나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에라도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 만일 21대 국회 중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발의·통과되는 첫 법안이 학생인권법이 될 것을 요구한다. 이미 너무 많이 늦었고, 너무 오래 기다렸다. 국회는, 정부는 학생인권에 응답하라. 그 대답의 첫 구절이 바로 학생인권법이다.

2024년 4월 22일

공동 주최 및 참여자 일동

○ 발언문

①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별도 배포)

② 조영선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운영위원이자 교사인 조영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청시행 활동가이자 교사로서 학교에 또 교사에게 왜 학생인권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계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과 구조적인 해법 대신 학생인권조례를 탓하며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갈라치기 하는 정부의 대책 때문에 학교는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를 더 신뢰할 수 없는 살얼음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생활지도고시'는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 근거를 가장 하위법인 학칙에 위임해놓고, 인권침해로 가득한 학칙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에 따라 다른 대접을 받게 되며, 이러한 불공평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의 공립학교에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복장규제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해부터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도로 조례가 공격받는 동안 교육청은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손 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생활지도 행위로 인해 한 학생이라도 모멸감을 느낀다면 이 상황을 인권의 기준으로 제대로 다뤄줄 기구가 없기에 아동학대신고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인권침해가 가능한 학칙에 기대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다가 학생에 대해 인권침해를 하게 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는 다시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발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교권4법'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육활동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공교육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는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가 명확하고 이 경계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 때 교사도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인권의 기준이 분명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옹호관이 지원할 수 있을 때, 교사는 자의적인 판단에 기대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원리에 의해 자신의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생활지도고시'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자의적으로 휘둘 수 있는 권력을 준 것처럼 포장하면서 사실상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장배경을 가진 다

수의 학생들 속에서 독박교실을 책임지는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독박교실을 지속하기 위한 자의적 권력이 아니라 인권의 기준으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인 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서 학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입니다. 국민이 늘 옳다고 하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 국회와 언론이 필요한 것처럼 학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교사에게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다수가 함께 맞닥뜨린 문제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교사 혼자 판단하도록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교사에게 온전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에 관한 법률과 제도가 판단을 함께 하고 구조적인 지원책 역시 마련한다면 교사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민주주의를 입틀막하는 행정권력과 검찰권력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에 주권자로 참여한 학생도 여전히 어떤 옷을 입었냐를 근거로 상의 -1점, 슬리퍼 -2점 등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벌점을 부여받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하지만, 학교는 한 번도 후퇴할만한 민주주의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정된 지 10년도 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주권자로 참여해 만들어진 21대 국회가 뒤늦게나마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바라며 학생인권법이 즉시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③ 박은경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박은경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힘들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를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과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키려 했던 학생인권조례를 모함하고 흠집내고 그들만의 색으로 덧칠하며 끊임없이 공격하던 자칭 보수세력들과 그들과 결탁한 반민주적인 정치세력들과의 싸움도 이젠 멈추려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 지닌 보편적 가치를 전부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례라는 한계에 부딪혀 이 땅의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인권이란 소중한 가치를 지역에 따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모든 학생이 형식이 아닌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가려 합니다. 학생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 바로 그 길을 가려 합니다.

1948년 12월 10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76년 전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되었지요.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하 부분 생략)

제30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도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국가, 집

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권리와 자유라도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할 권리가 있다고 암시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바로 이겁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으로 인권은 사람들이 어떤 차이점을 지녔든, 어떤 상황에서든 전 세계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에게 모두 동등한 것입니다.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 또는 젠더 정체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그 외의 사상, 국가 및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외의 상황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이도 존재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경시되고 무시되고 차별받아온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권의 가치를 찾아주기 위해 조례가 아닌 법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의 새로운 길을 가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인권법 제정이란 이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야 하는 길이지요. 그러나 그동안 이 길을 만들어야 하는 어른들이 방치했던 이 길. 지금 우리는 이 길, 학생인권법을 만드는 길을 향해 나갈 겁니다.

학생인권법 제정 아마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학생들을 위해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④ 이제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안녕하십니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제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법안 제정을 위한 연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 누구도 모든 학생이 온전한 시민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인권법은 이를 위한 가장 최소한 기준선입니다. 학생인권법에 명시된 학생 인권은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학생 인권의 보장은 단순히 학생을 아무 일 없이 공부만 하고 학교의 규율에 순응하는 대상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이자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인권법은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로서의 법률이 아니라 학생 및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실제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며, 무엇보다 실질적인 합의된 강력한 인권 보장 내용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동안은 각 지역에서 조례로서만 학생의 권리가 제한적으로 보호되고 있었으며, 이런 법률에 우선하지 못하는 조례를 통한 학생 인권의 보장은 지역의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많은 격차와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률로서 우리 사회가 합의한 학생 인권의 내용과 권리들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생인권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려는 학생인권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침해의 신고자에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자신의 인권침해 사안을 성인만큼 표현하지 못하고 자력이 없는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이 남용되거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대한 방안은 이미 법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위원회 구성원의 다양성은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원회로 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장 전문가를 포함하여 교육 현장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균형 있게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학생인권 기준을 세우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인권 분야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을 갖춘 민간 위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학생인권법에는 여러 조항에 걸쳐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을 위한 내용과 학생, 교원, 보호자 사이의 존중을 도모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된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이 법에서 규정된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대상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에 그 대상의 책임을 규정하거나 해석의 주의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현재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의 또 다른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면한 학생 인권의 현실, 학교 현장의 현실,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교원, 보호자 등이 처한 현실에 비추어 모두를 위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달성하고자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려는 의지가 모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은 우리 사회가 아동의 인격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적, 윤리적 합의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학교 현장의 고민과 요구에 귀 기울이면서도 '학생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학교 문화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균형 있게 실현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손을 맞잡고 노력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소중한 논의가 학생 인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